

**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
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**

2013년 9월 4일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박 상 수

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08월 22일 (목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2013년 08월 27일 (화)

4. 관련근거

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102조 제1항 및 제105조 제1항

5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고,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 제명 등 띄어쓰기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6. 주요 개정내용

가. 상위법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소규모 공사 금액 기준 상향(안 제2조 1호 및 2호)

나. 소규모 공사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조항 신설 (안 제7조 제2항)

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정비

7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고,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며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은 2008년 12월 9일 상위법인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시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 1호 소규모공사의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변경하였고,

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,

2010년 12월 13일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50조를 제102조 제1항으로, 제52조 제1항을 제105조 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,

기타 조례 제명 등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신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<u>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 업무위탁에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 시마포구</u>(이하 “구” 라 한다) 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에 대한 감독(감리)업무를 <u>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의 규정 에 의하여</u> 법인·단체 또는 그 <u>기관에게</u>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소규모공사” 라 함은 건설 <u>기술관리법시행령</u> 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<u>제50조 규 정에 의한 100억원미만 공사 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 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 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.</u></p> | 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 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 시 마포구</u>----- ----- ----- <u>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</u> ----- <u>기관에</u> 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1. “소규모공사” 란 「건설기 <u>술관리법시행령</u>」----- ----- <u>제102조제1항에 따 른 2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서 울특별시 마포구청장</u>----- ----- <u>전면 책임 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</u>----- ----- -----.</p> |

2. “감독업무” 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.

3. “주요시설물 공사” 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.

4. “조경공사” 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·인조목·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·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.

5. “기계설비 공사” 라 함은 건축물·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·위생·냉난방·공기조화·기계기구·배관설비 등을 조립·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.

2. “감독업무” 란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영 제105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.

3. “주요시설물공사” 란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.

4. “조경공사” 란 -----

-----그늘막

-----.

5. “기계설비공사” 란 건축물·플랜트 및 그 밖의 -----

-----.

6. “치수공사” 라 함은 하천
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
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
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소규모공사 감
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
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
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업무의 위탁) 위탁대상은
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중
서울특별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
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각 호
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
한 감독업무로 이를 서울특별시
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시설관리
공단, 다른 행정기관·법인·단
체 또는 구가 지방공기업법에
의하여 설치한 공법인에게 위
탁 할 수 있다.

1. 주요시설물 공사
2. (생략)
3. 기계설비 공사
4. (생략)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)

6. “치수공사” 란 -----

-----.

제3조(적용범위) -----

-- 조례에서 ----- 따른
다.

제4조(업무의 위탁) 서울특별시
마포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에
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---
--- 호의 어느 하나-----
----- 감독업무는

----- 「지
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치한 공
법인에 위탁할 -----.

1. 주요시설물공사
2. (현행과 같음)
3. 기계설비공사
4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-

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 (생략)

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7조(적격자 심의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<신 설>

----- 선정할 때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수탁기관-----

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-----
- 제5조에 따라 -----
-----.

제7조(적격자 심의위원회) ①-----
----- 1
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
내-----
----- 해당 -----

-----.

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

②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토목팀장으로 하고, 위원회의 제반 회무와 회의록의 정리·보관을 관장하도록 한다.

제8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

① (생략)

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

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③ -----
-----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-----
-----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-----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-----
-----.

⑥ -----

1명-----
----- 모든 사무와 회의록의 작성 및 정리·보관-----.

제8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권한행사-----

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제9조(협약체결 등) ①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·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5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제11조(비용 징수 등)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수탁자의 공사자재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 등 지시·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, 수탁자로 하여금 시공자로부터 당해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-----.

제9조(협약체결 등) ①-----

----- 각호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그 밖에 -----

②-----

----- 30일 전-----

-----.

제11조(비용 징수 등) -----

----- 해당 -----

-----.

제12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수탁 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·불필요한 서류의 요구·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3조(지도·감독)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조사 및 검사 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·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·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조치명령 등을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4조(사무편람) ① (생략)

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

제12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-----
----- 수행할 때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지도·감독) ①-----
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

-----.

②----- 보고·검사 결과----- 위법
또는 부당한 경우-----

-----.

③제2항에 따라 -----

-----.

제14조(사무편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수탁기관이 사무편람-----

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
얻어야 한다.

제15조(위탁의 취소 등) ①구청장
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
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
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
이행하지 아니한 때
2. (생략)
3.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
위반한 때

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
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
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
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6조(보칙) 구청장은 제5조 내
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
및 구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
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
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
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
니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
으로 정한다.

-----.

제15조(위탁의 취소 등) ①-----
----- 호의 어느 하나-----
----- 발생한 경우-----
-----.

1. -----
----- 아니한 경우
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
-- 위반한 경우

②----- 제1항에 따라 -----
----- 수탁기관에 -----
-----.

제16조(보칙) ----- 제5조부
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
----- 「지방공기업
법」에 따라 -----

-----.

제17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
에 -----
-----.

관계 법령

■ 지방자치법 [시행 2013.3.23.] 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, 타법개정]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[시행 2013.4.1] [대통령령 제24390호, 2013.2.20, 일부개정]

제102조(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)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. <개정 2013.3.23>

1.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

가.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

1) ~ 22) 생략

나. 발주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
2. 부분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

가. 제1호가목의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·터널·배수문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
나. 발주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부분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

[전문개정 2010.12.13] [제50조에서 이동 <2010.12.13>]

제105조(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)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3.23>

1. ~ 14. 생략

[전문개정 2010.12.13][제52조에서 이동 <2010.12.13>]